

VII- 16	제 목	일괄하도급 후 재하도급 가능 여부		
회신일자	2012-02-07	회신방법	지정부 전자민원	
질 의 요 지				
○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기자재 납품설치는 A사가, 노무비 부분은 B사가 할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				
회 신 내 용	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됩니다.				
○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, 즉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·조정하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.				
○ 또한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행위도 금지되며, 다만 하도급받은 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				
○ 만약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전혀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주거나 재하도급주는 경우 및 기자재설치부분이 아닌 부분을 재하도급주는 행위는 같은 법 제42조4호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				